

# 산업안전 Q&A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 1항(작업장의 순회점검) “도급인의 사업주는 법 제29조 1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1. 여기에서 사업주란 반드시 사업을 대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지?
2.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경우에 안전관리자의 작업장 순회점검을 사업주의 작업장 순회점검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3. 안전관리자의 작업장 순회점검을 사업주 순회점검으로 볼 수 없다면 실제로 수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사업본부장이 작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안전점검일지를 기록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를 말하는 것으로,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도급인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로서 법상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 능력이 없는 법인 또는 장소적으로 떨어진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대표이사 등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한 행위자로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질의 2, 3)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을 하기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면 된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대하여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호이스트 운행구간은 대부분 낙하물 방지망이 없어서 호이스트 탑승 대기 근로자들을 위해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상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이스트 운전원은 그 대기장소가 바로, 낙하물 방호선반 아래에 근무시간 내내 있어야 하고, 혹시나 있을 낙하물에 대한 2차 반동으로(낙하물등이 튕겨서) 재해를 입을 수 있는바, 최근 들어 운전원 대피소 겸 대기소로 방호선반 아래나 옆에 놓을 수 있는 기성품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그 정확한 물품명이 없어서 질의하오니 회시를 부탁드립니다.



호이스트 운전원의 대기장소로서 동 운전원을 위하여 별도의 대기소를 당 호이스트 방호선반 아래에 만들어 주거나 기성품을 구입·설치하여 주는 것은 호이스트 운전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이니, 호이스트 운전원의 대기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기용제나 특정화학물질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으로 특검을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작업환경측정 횟수 조정을 3년에 1회로 받은 경우 검진 실시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회수조정과 관계 없이 1년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제3항 등에서 사업주는 유기용제와 특정화학물질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배치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 1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작업환경측정 횟수 조정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작업환경측정 횟수 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해 1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는 직원은 약 50여명인 일반 음식점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해 매년 1회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신규 입사시에도 건강진단을 필한 후 입사를 하게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진단 항목은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B형간염, 혈청검사, S.T.D 검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 및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질의 요지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병원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하는 내용을 말하고 검사를 받은 항목은 검진을 안받고 좀 저렴하게 안받은 항목만 받을 수 없는가 문의를 하니 그렇게 하면 대부분 진단을 다 받은 것이어서 의사의 진찰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하더군요.
2. 이중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같은 음식점 업소는 비용과 시간적 낭비가 되는 이중적인 진단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귀하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음식점으로서 매년 1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병행(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항목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를 하시되 중복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이중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진을 받지 않을 시는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